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년월일 : 2019. 0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운영방침 통일 및 서비스 차별 철폐를 도모하며,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등급 외 거동불편자 교통수단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절차를 구체화하여 특별교통수단 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장애인 인권 등의 교육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상시화하고자,
- 일부 내용을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주문사항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원칙(안 제5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이상 확보(관내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노선운행차량 또는 임차택시 도입시 및 휠체어이용자 특별교통수단 우선이용

나. 운행시간 및 지역(안 제6조)

- 강원도 관할지역 및 인접생활권 내 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원칙

다.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등(안 제8조 내지 제10조)

- 본인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신분증) 및 이용자격증명서류(보장구 이용증명서류 또는 거동불편진단서 등) 제출
- 1·2급 장애인 5년, 그 외 이용자 진단서에 따른 이용계약기간 동안 이용(이용기간 연장 가능)

라. 이용요금(안 제11조)

- 정기노선운행차량 :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 특별교통수단 및 휠체어탑승장비 미탑재 차량 : 관내요금 시내 버스 요금 2배 이하, 관외요금 시외버스요금 2배 이하

마. 이동지원센터(안 제12조)

- 등록신청 접수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관리 수행
- 이동지원센터 설치·관리운영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운영

바. 심의위원회(안 제13조)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교통 또는 복지업무 소관 과장을 포함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 이용기간 및 이용요금 변경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사. 위탁업체 및 운전자 교육(안 제14조)

- 인권교육, 서비스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1. 25. ~ 2019. 2.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2019. 1. 4. 기획감사실-195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1. 4. 기획감사실-195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있음, 반영완료(2019. 1. 10. 주민복지과-2078호)
 -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함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평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특별교통수단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이동지원수단
3. 제5조제3항의 차량 및 자동차

제3조(적용범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운영

제5조(운영원칙)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용실태를 감안하여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해당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그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령 제6조제2항제2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당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부령 제6조제2항 각 호의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운행시간 및 지역) ① 부령 제6조제2항제1호의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무휴 24시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령 제6조제2항제2호의 특별교통수단과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행시간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강원도의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가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해당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도 반사거울 등을 통하여 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장 이용

제8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주소를 가진 부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부령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

1. 관련규정에 따른 보장구이용 대상자
2. 임산부 등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의 등록을 필요로 한다)

제9조(등록 및 심사 등) ①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 가. 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나.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서류
-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

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할 경우 그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한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당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해당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이하 “이용기간”이라 한다)은 제9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기간

② 이용대상자가 해당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장신청 절차 등은 제9조에, 이용기간의 연장 등은 제1항에 각각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④ 이용대상자는 이용기간 중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이용요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해당 범위의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부령 제6조제2항제2호의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시내버스요금 이하
 2. 부령 제6조제2항제1호의 특별교통수단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월차
 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
 하여 다음 각 목의 요금 이하
 - 가. 관내요금: 관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이동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

제12조(이동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교통약자
 의 이동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등록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자격심사 및 확인
3. 운행 및 관리 운영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한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단체
3. 해당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개인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지속적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이용요금의 수납을 대행하도록 하고, 그 수납금을 위탁운영에 필요한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전(補填) 해주어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용대상자의 등록(재심사를 포함한다)
2. 이용기간의 결정 및 연장
3. 이용요금의 결정 및 변경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평창군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통 또는 복지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과장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보칙

- 제14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희롱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동센터의 위탁운영 및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이용대상자, 설치·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와 그 수탁자 및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계속된다.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 급)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 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붙임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297mm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부령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부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복지용구) 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서류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사)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 (☎033-336-3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본인은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데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관계법령 발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한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③ 보장구 중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장구급여 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장구 처방전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장애등급판정기준

5. 장애진단서 작성 기준

가.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등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 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학과) 전문의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 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 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 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루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루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루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루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 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관장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 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 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 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 · 요루 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 장애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 소아청소년과 · 소아신경과 전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연락처	(033) 330 - 2470